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보험 전략적 자산배분 및 시장리서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추가)합격자 명단 공고

2026년 4월 30일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53호)한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추가)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1 최종(추가)합격자

채용분야	선발 직급	응시번호 (성명)
보험 전략적 자산배분 및 시장리서치	행정주사보	01 (김ㅇ은)

※ 최종(추가)합격자에게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별도 안내할 예정

2 최종(추가)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 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8.(금)

☐ 등록 방법 : 최종(추가)합격자 제출서류 등기우편 제출

○ 제출 주소 : (우편번호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
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7층 운영지원과(채용담당)

□ 최종(추가)합격자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1부

※ 종류 : "상세"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되도록 발급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서식2>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상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또는 보건소(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중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

④ 반명합판 사진 3매 (3cm * 4cm)

※ 6개월 이내 촬영분으로써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

□ 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조치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우정 사업본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 최종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044-200-882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우정사업본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병적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조회
2	범죄경력 유무조회
3	병적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 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